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56 발의연월일: 2020. 11. 23.

발 의 자: 박성준·김승원·박 정

박완주 • 윤재갑 • 김영호

이용선 · 김경만 · 오영환

이정문・남인순・이성만

서영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만 응급처치를 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전시, 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의무인력은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의무인력 운용에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·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 수행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조제5호 신설, 제1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"군응급처치보조인"이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군인을 말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군응급처치보조인) ① 군응급처치보조인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 ·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군응급처치보조인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"군응급처치보조인"이란 전
	<u>시·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</u>
	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
	나 군작전 수행 중 응급처치
	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
	이수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
	터 자격을 인정받은 군인을
	<u>말한다.</u>
<u> <신 설></u>	제11조의2(군응급처치보조인) ①
	군응급처치보조인은 「응급의
	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
	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
	불구하고 전시·사변이나 그
	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
	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
	복무기간에 한하여 같은 법 제
	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를
	수행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군응급처치보

 조인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

 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

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